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 ▲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감독상, ▲ 송강호 배우, 영화 <브로커> 남우주연상 수상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권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용 QR>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비 소득공제 개요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3.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자료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2431)
		담당자	사무관	박선린 (044-203-243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 **개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개정, '23.7.1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신문·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18.7월~), 공연 관람(18.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19.7월~), 신문 구독(21.1월~), **영화상영관 입장(23.7월~)**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율/공제 한도)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합하여 300만원

* 「내수활성화 대책」 (3.2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한시(‘23.4~12월)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율 10%p 상향 예정(30%→40%)**

붙임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구분	주요 내용	포함 여부
영화 관람	▶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	포함
	▶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교환·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 등) 구매 비용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식음료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팝콘, 음료 등) 구매 비용	제외
굿즈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	제외
영화 외 콘텐츠	▶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공연’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기포함('18년 7월~)	포함
	▶ 게임 및 스포츠경기 중계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제외
	▶ 북토크, 강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 ▶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	
대관	▶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 비용 *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관람하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관람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를 의미	포함
	▶ 영화관람 이외의 목적(행사 등)으로 대관 시, 대관 비용 ▶ 법인, 단체의 대관 비용	제외
결합상품	▶ 영화관람권과 그 외 상품구매권(식음료, OTT, 굿즈 등)이 결합된 형태의 이용권(기프트콘 등) 구매 비용 ※ 단, 결합상품이용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 멤버십(회원권, 구독권) 구매비용 ※ 단, 멤버십(회원권, 구독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해당 영화표 구매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 필요)	제외

○ 결제방식별

구분	주요 내용 및 포함 여부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	▶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을 사용하여 영화표 구매 시, 관람권 등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단, 영화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트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제휴사 포인트 결제	▶ 제휴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제휴사 포인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는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외부 사이트 결제	▶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 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우리 1월 연말 정산에 꼭 만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 1688-0700

 문화체육관광부

 KCSA 한국문화정보원

<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합계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항목을 구매 및 결제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공제 번호
지불 후만 해당 QR코드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 확인하세요

QR코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의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뉴스,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KCSA 한국문화정보원

**누리고 돌려받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구입 및 공연, 종교활동, 영화관람료 사용의 금액에 대해 연차별로 사용금액 총액 300만 원 또는 해당해 소득공제에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합계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15%	300만 원
연말정산 중 취급처에서 납부	30%	
연말정산 중 개인소득세 납부	45%	300만 원
문화비 사용량	30%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까지
문화는 나누고 혜택은 더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구입비

ISBN 978, 양자본 시제되는 도서(전자책 제외)와 ECR에 있는 전자책, 종교책(계간 단 계책 제외)에 해당
비단, 도서사 판매처의 판매, 공구 등과 관련된 도서(책) 가격 세금은 제외하지 않음

공연 티켓비

예매, 취소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 공연에 특화된 축제, 행사 관측(관공예)등이 티켓 용에 포함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된 문화행사 경우만 해당
비단, 공연료, 주석비 등이 포함된 공연티켓과 관련된 구매 및 결제는 제외하지 않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관람이 될 교육체험 프로그램 포함하여 목적으로 한 입장료에 해당
비단, 기념품, 음료 등 박물관·미술관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이 교육 관련 비용, 주석비 등이 포함된 관람객의 관련된 구매 및 결제는 제외하지 않음

신문 구독료

신문의 제호, 제1호에 따른 신문 구독(종이신문 제외)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

영화관람료

상영장비, 상영시간, 상영권, 좌석 등차 배정비와 실제 영화상영권 입장료에 가능한 영화료 구매에 지출한 금액

***23년 7월 1일부터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앞면) >

< 문화비 소득공제 홍보물(뒷면) >